

## 한국체육대학교 차량관리규정

제정 1980. 8. 25. (규칙 제 22호)  
제3차 변경 1997. 6. 21. (규칙 제218호)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소유의 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훈련 및 경기(차량지원)의 능률적인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도) ①본 대학교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여 사용한다.

1. 승용차량은 총장 전용 및 교직원의 공무수행용으로 한다.
  2. 승합차량은 학생훈련(출전 포함), 학내·외 업무 및 교직원 출·퇴근으로 한다.  
②본 대학교의 차량은 업무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.

제 3 조(운행신청) ① 제 2 조 제 1항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신청서를 운행일 5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한다.
  - 동일 시간에 사용이 중복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총장이 조정·결정한다.

제 4 조(신용심사) 본 대학원은 학생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을 충당하는 경우에 그려지

제 5 조(의무와 책임) 본 대학교의 차량을 사용할 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 
다.

제 6 조(기산근무율) 운전기사는 운행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한다.

제 7 조(운해의지) 운전기사는 임의 운해상황을 인지에 적합히 기록하여 경재를 바느다

부 칙 (1980. 8. 25. 제 2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0. 9. 14. 제 9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칙 (1995. 10. 11. 제163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칙 (1997. 6. 21. 제218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칙 (2012. 3. 28. 제59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( ) 운행 신청서

1. 신청자 소속	과	직명	성명
2. 사용 일자	년 월 일	~	: 부터 (일간) 년 월 일 : 까지
3. 탑승자	외명		
4. 사용 목적			
5. 목적지 (경유지포함)			
6. 비고			

위와 같이 차량운행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소속과장) ☐

위 차량 운행신청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결재	계	팀장	과장	국장	총장

탑승자 외명  
탑승일자 년 월 일 : 부터  
(일간)  
년 월 일 : 까지

목적지 및 경유지 :

상기와 같이 운행을 승인함.

년 월 일

한국체육대학교총장